

개정 2004.12.15, 2005.2.24, 2007.1.31, 2007.3.9, 2007.7.30, 2007.10.01 2008.02.01,
2008.08.13, 2008.09.01, 2009.02.04, 2009.02.23, 2009.08.31 2009.10.19, 2010.10.04,
2011.01.01, 2011.05.24, 2011.12.01, 2012.04.02 2012.09.03, 2012.11.23, 2012.12.21, 2013.08.23,
2014.3.28, 2014.10.01, 2015.02.16, 2015.03.16, 2015.06.15, 2015.11.02, 2016.01.08, 2016.04.01
2016.07.18, 2016.08.01, 2017.01.23, 2017.04.03, 2018.01.29, 2018.03.02, 2018.04.30.
2018.09.01

신 용 거 래 설 명 서

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신용거래는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시장변동에 따라 손실의 위험성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거래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귀하께서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한화투자증권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목 차 》

1. 신용거래제도 개요	-----	4
2. 신용거래의 위험성	-----	7
3. 기타 주요사항	-----	8

1. 신용거래제도 개요

□ 신용거래의 개념

신용거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수에 대하여는 신용거래용자를, 매도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대주를 받아 수도 결제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의 재원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회사의 자금이나 주권을 빌려주는 자기신용과 한국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고객에게 빌려주는 유통금융이 있습니다.

□ 신용거래의 구조

1) 신용거래계좌 설정

① 약관 및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용거래약관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2) 신용거래 개시

① 신용거래보증금률에 따라 사전에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신용거래보증금률 :

구분		기본형	안정형	신용대용형
용자	40%종목군	45%(현금 35%, 대용10%)	45% (현금45%)	45% (대용45%)
	50%종목군	50%(현금 40%, 대용10%)	50% (현금50%)	50% (대용50%)
대주		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		

② 최소담보유지비율은 신용공여유형별 / 신용공여금액별로 신용거래용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40%~200%로 차등적용되며, 미달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요구는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가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라 한다)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추가담보에 대한 징구의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신용거래용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평가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 ③ 추가담보납부기간(담보비율에 따라 다르며, 요구일로부터 1~2일)동안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합니다.
- ④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신용거래대주 담보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이용료(연 0.5%)를 지급합니다.

신용거래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이자율 등과 종목군별 신용거래한도는 후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담보평가방법

- 회사는 원담보 및 부담보 종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담보평가를 합니다.

- ① 주식 : 당일종가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 해당종목은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용용자, 주식담보대출, 현금주식
거래정지 종목	거래소 대응가 '0' 인 종목 → '0' 으로 평가 거래소 대응가가 '0' 이 아닌경우 →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의 순으로 평가
관리 /정리매매	'0' 으로 평가 (거래소 대응가 없음)
투자위험 /경고종목	당일종가 > 최근일종가 순으로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응가 '0' 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 됩니다.

※ [참고] 거래소 대응가가 '0' 인 경우

-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
- 자진 상장폐지신청으로 거래정지가 된 종목
- 투자위험/경고종목
- 상장폐지실질심사(거래소, 코스닥 실질심사규정) 대상(예상) 종목으로 거래정지된 종목
- 기타 거래소가 대응가를 '0' 으로 정하는 경우

4) 신용거래대상종목

- ①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합니다.
- ② 그 외에 신용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전에 예납조치 또는 수도전예납조치를 취했을 때
 - 회사가 정한 종목

5) 상환

- ① 회사는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일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 ② 고객은 매매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 전일(휴장일 제외)까지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하고, 현금, 주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상환은 상환을 신청(4시까지)한 당일 상환됩니다.
- ③ **회사는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임의처분 방법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한 방법)
 - ㄱ. 미상환용자금 발생계좌
 - 자동 현금상환 → 미상환용자금 종목 → 미상환용자금 종목 전량 결제 후 상환금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 미수 처리 후 현금종목
 - ㄴ. 담보부족 발생계좌
 - 자동현금상환 → 신용용자주식 → 신용대주주식 → 담보대출주식 → 담보대출채권 → 담보대출 ELS (주식임의처분 순서 : 용자일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
 - 신용거래용자 또는 신용거래대주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의 임의처분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 ⑥ 임의상환 처분순서의 변경은 처분일 오전 8시 50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감자 등의 제권리가 발생되거나 담보교체가 있는 경우, 요청한 종목으로 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용거래의 위험성

신용거래는 일정률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신용거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거래용자의 경우 주가 하락 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률 60%인 경우 6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50%입니다.(1,000 ÷ 400 × 100) 당일 상한가에 매입하여 하한가에 마치고 그 다음날도 하한가로 마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6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 신용거래대주의 경우 주가 상승 시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례) 주식의 상한가 폭은 각각 30%이며, 보증금율 100%일 때 현금 1,000만원을 담보로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 받은 경우 당일 하한가에 매도하여 상한가로 마치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가 계속된다면 그 손실액은 투자원금(1,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3) 고객은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추가담보납부 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임의상환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용거래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일 때에는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신용거래용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있는 고객**은 신용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 **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신용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신용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신용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주요사항

□ 약관.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신용거래용자(대주)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 신용거래보증금률, 대용증권 납부가능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신용거래용자(대주)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통금융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 1)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신용용자를 행하여 고객이 매수한 증권(이하 "유통금융매수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 신주인수권 등 권리관계의 처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분배금 등을 수령하거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정받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2)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유통금융매수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유통금융 대주를 포함한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제3자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 3) 고객은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금융매수증권이 제3자에게 대여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유통금융매수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고객이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고객의 정보는 증권금융회사로 제공되며 증권금융회사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고객에게 송부합니다.

② 이를 위해 회사는 유통금융매수증권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공매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 신용거래대주를 받은 고객이 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 :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및 평가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잔고 공시대상 :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종목별 총수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본 설명서의 내용은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용거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1] 신용거래보증금률 등

구 분	내 용				
신용거래보증금률	구분		기본형	안정형	신용대용형
	용자	40% 종목군	45% (현금 35%, 대용10%)	45% (현금45%)	45% (대용45%)
		50% 종목군	50% 현금 40%, 대용10%)	50% (현금50%)	50% (대용50%)
대주		대용 100% (수수료 및 거래세는 현금납부)			
신용공여 한도	동일고객 총 20억원				
담보유지비율	140% 이상 (당일증가로 평가)				
상환기간	신용용자: 90일 (*조건 충족시 유통 2회/자기 3회 연장 가능) 신용대주: 60일 (만기연장 불가)				

	*신용만기연장 조건 : 고객의 만기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고객별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신용대용형의 경우 원담보비율 140%이상)이고, 해당종목이 신용용자 가능 종목 대출상환금 접수 마감시한 : 영업일 기준, 영업점 마감 시간인 17:00														
추가납부기간	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담보비율 130%미만) 또는 다음 영업일(담보비율 130%이상~140%미만)														
임의상환정리	담보부족 발생일 기준 익영업일(130%미만의 경우) 담보부족 발생일 기준 익익영업일(130%이상의 경우)														
신용공여이자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용자 기간</th> <th>적용금리</th> </tr> </thead> <tbody> <tr> <td>1~7일</td> <td>4.9%</td> </tr> <tr> <td>8~15일</td> <td>6.5%</td> </tr> <tr> <td>16~30일</td> <td>7.0%</td> </tr> <tr> <td>31~60일</td> <td>7.5%</td> </tr> <tr> <td>61~90일</td> <td>8.0%</td> </tr> <tr> <td>91일 이상</td> <td>8.5%</td> </tr> </tbody> </table>	용자 기간	적용금리	1~7일	4.9%	8~15일	6.5%	16~30일	7.0%	31~60일	7.5%	61~90일	8.0%	91일 이상	8.5%
용자 기간	적용금리														
1~7일	4.9%														
8~15일	6.5%														
16~30일	7.0%														
31~60일	7.5%														
61~90일	8.0%														
91일 이상	8.5%														
신용공여이자징수일	매월 첫 영업일														
신용이자 적용방식	소급법 : [표 3] 신용거래용자이자 계산 예시 참조														
신용거래 가능종목	상장종목 (관리·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위탁증거금 100%로 지정된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종목은 제외)														
상환방법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 시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 됨)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이용료	연 0%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연 0.5%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지급일	매월 첫 영업일														

※ 연체이자율(미상환용자금 및 신용이자미납 등)은 실제 용자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게 적용되는 만기내 용자 기간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가산이자율(3%P)을 합산하여 최대 연 11%에서 결정됩니다.

가. 신용이자 미납금 최초발생시엔 미납이자분에 대해 연 11% 적용

나. 동일용자건에 대해 전월미납분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해서 발생한 신용이자미납금 산정시 원금에 대해 연 11% 연체이율 적용

[표2] 종목군별 신용공여 한도

종목군	신용 공여 한도
A군	20억원
B군	10억원

C군	5억원
D군	2억원
E군	1억원

※ 종목군은 당사가 개별 주식의 위험도 등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용공여 한도 및 적용 금리는 매입/대출 시 한도와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변경된 종목군에 따라 새로운 신용공여 한도와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 및 수익 기여도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감조정 전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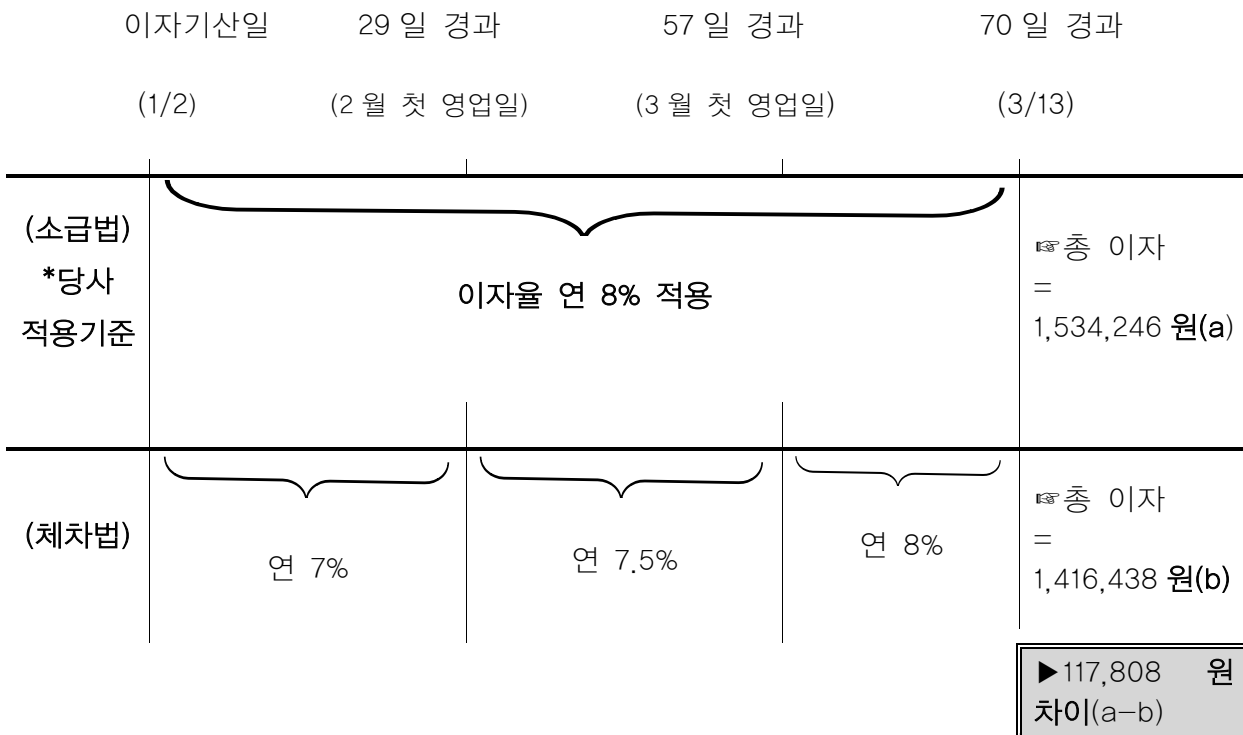
[표3] 신용거래용자 이자 계산 (예시)

□ 신용 이자율 적용방식의 종류 : 당사는 소급법을 적용 함

적용방식	내용
체차법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소급법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단일법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신용거래용자이자의 계산

※ 용자 이자 계산 사례(용자금 1억원, 대출기간 70일, 1/2~3/13)



비고	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2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556,164원	1억 X 7.0% X 29일/365
3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615,069원	(1억 X 7.5% X 57일/365) - 556,164
상환일	상환이자	363,013원	(1억 X 8.0% X 70일/365) - 1,171,233
	합계	1,534,246원	

※ 보통년은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용자 기간	적용금리
1~7일	4.9%
8~15일	6.5%
16~30일	7.0%
31~60일	7.5%
61~90일	8.0%
91일 이상	8.5%

※ 이자 적용방식 : 소급법

소급법이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습니다.

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용자] 핵심설명서

1 신용거래 개요

- 신용거래용자란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기간 중에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연속재매매)이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용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만 납부 가능)

2 신용거래의 위험성

- 신용거래용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4.투자사례(2) 참조)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4.투자사례(1)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투자자는 주소.사무소 등 연락장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거래용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내의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출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신용거래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4.투자사례(3) 참고), 각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통합공시시스템 → 전체메뉴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용자이자율)
- 유통금융종목(증권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매수한 종목)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객의 정보는 증권금융회사에 제공되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사례

-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
- 투자원금 400 만원, 신용거래용자금 600 만원, 10,000 원인 주식 1,000 주 매입, 최저 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아 그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 가정)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평가비율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67%	
D일 장마감	8,500원	8,500,000원	142%	
D+1일	7,500원	7,500,000원	125%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7,500원	7,500,000원	125%	추가담보 미납(90만원 담보부족)
D+2일 -담보부족발생일 다음영업일	임의처분 실행			

(1)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7,5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3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629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629주)이 6,4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403만원(629주×6,400원)으로 담보부족금액(90만원)의 4.5배 수준**

(2) 연속 담보부족인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7,5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하한가, 5,2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가 6,4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640만원(1,000주×6,400원)으로 **투자원금(400만원)의 상당부분(90%)에 달하는 손실(360만원) 기록**

○ 융자 이자 계산 사례(융자금 1억원, 대출기간 70일, 1/2~3/13)

비고	이자종류	이자금액	계산식
2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556,164원	1억 × 7.0% × 29일/365
3월 첫영업일	정기이자	615,069원	(1억 × 7.5% × 57일/365) - 556,164
상환일	상환이자	363,013원	(1억 × 8.0% × 70일/365) - 1,171,233
	합계	1,534,246원	

※ 보통년은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 이자 징수 시기 : (정기) 매월 첫영업일에 전월분 이자 징수
(상환) 상환일에 정기이자 징수일부턴 상환일까지 경과 기간에 대해 이자 징수

* 신용거래 융자 이자 적용방식의 종류

- **체차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 **소급법** :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 **단일법** :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구 분	내 용														
신용거래보증금율	종목군에 따라 45% 또는 50% (단, 신용대주: 대용 100%)														
용자한도	동일고객 총 20 억원내														
담보유지비율	140%이상 (당일증가로 평가하며, 유형별 고객별로 차등적용)														
상환 기간	신용용자: 90 일 (*조건 충족시 유통 2 회 연장 가능, 자기 3 회 연장 가능) 신용대주: 60 일 (연장 불가) *신용만기연장 조건 : 고객의 만기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연장시점에 고객별 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신용대용형의 경우 원담보비율 140%이상)이고, 해당종목이 신용용자 가능 종목														
추가납부기간	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신용거래용자이자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용자 기간</th> <th>적용금리</th> </tr> </thead> <tbody> <tr> <td>1~7일</td> <td>4.9%</td> </tr> <tr> <td>8~15일</td> <td>6.5%</td> </tr> <tr> <td>16~30일</td> <td>7.0%</td> </tr> <tr> <td>31~60일</td> <td>7.5%</td> </tr> <tr> <td>61~90일</td> <td>8.0%</td> </tr> <tr> <td>91일 이상</td> <td>8.5%</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연체시: 연 11%</p>	용자 기간	적용금리	1~7일	4.9%	8~15일	6.5%	16~30일	7.0%	31~60일	7.5%	61~90일	8.0%	91일 이상	8.5%
용자 기간	적용금리														
1~7일	4.9%														
8~15일	6.5%														
16~30일	7.0%														
31~60일	7.5%														
61~90일	8.0%														
91일 이상	8.5%														
신용거래이자 적용방식	소급법 : [표 3] 신용거래용자이자 계산 예시 참조														
신용거래용자 가능종목	상장종목 (관리·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위탁증거금 100%로 지정된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제외)														
상환방법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														

※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금융투자협회(2003-9423)**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용거래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직원 확인]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_____님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고객지원센터 ☎080-851-8282,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20 ____년 ____월 ____일 한화투자증권 지점 직원명: _____ (서명 또는 인)